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문화관광과장)
- 제출일자: 2024. 11. 6.(수)
- 회부일자: 2024. 11. 6.(수)
- 검토기간: 2024. 11. 7.(목) ~ 11. 14.(목)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조례 6건의 용어 및 조문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법 체계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개정 상위법령의 제명을 반영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용어를 변경함.
- 나.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인용된 법률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함.
- 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7조)
- 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용된 법률의 제명을 정비함.(안 제4조)

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중 인용된 대구광역시 조례의 제명 변경 등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함.(안 제9조 및 안 제34조)

바.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9조 및 안 제34조)

사.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후 사용한 “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 활동에 따라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이라는 의미로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물과 무형문화재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 1972년 11월 16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지질학적 생성물 등을 “자연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정부가 2024년 5월 17일에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고, 국회가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문화재보호법」 등 11개의 법률을 제정·개정하여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 이 조례안은 해당 법령을 인용하거나, “문화재”라는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른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래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 ⑫ (생략)